

특성화고교졸업재직자(정원외)

지원자격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입학일(2023. 3. 1.) 기준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②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ㄷ.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ㄹ.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재직기간 산정기준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3.1.기준으로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3년 이상이라 함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이 1,080일(30일*3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근무기간은 고교 졸업일 이후부터 재직한 기간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군 의무복무, 병역특례 경력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기간 중 재직 중이어야 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1,000점 만점)

평생교육융합계열(학생부 100%)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최대 10점(총점에 가산합니다.)

V. 전형별 세부사항

특성화고교졸업재직자(정원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p. 3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특성화고교졸업재직자전형의 모집단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1)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지원자

구분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동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비동의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및 그 이전 졸업자	해당사항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1부

2) 지원자격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종사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경력)증명서 1부 다음의 증명서 중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군 의무복무기간 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실 기재)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납세증명서 1부
	해당자	·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군 의무복무기간 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실 기재)
1차 산업 (농업,수산업) 종사자	공통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1부 (농지원부 등)
	군 의무복무기간 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실 기재)

※ 제출장소: (우) 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본관 3층 입학팀

※ 제출기한: 2023.1.4.(수) 17:00까지 대학 도착분